

| GREEN ISSUE 2014-21 |

# 에너지바우처 제도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정책 방안

유종익 연구위원 | 2014년 12월 26일

## Contents

1. 에너지 복지의 현황 및 필요성
2. 에너지바우처의 개요
3. 에너지바우처 사업 주요 내용
4.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 제언
5. 참고문헌





# GREEN ISSUE 2014-21

## 에너지바우처 제도 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정책 방안

### 요약

#### Issue

-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과 비교하여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에너지 비용 증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가중됨.
- 취약계층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촛불화재는 2012년 한해 302건, 4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바 있음.
- 정부는 에너지 복지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고려하고 있음.
- 특히, 2015년 12월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실행됨에 따라 구체적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있음.

#### Argument

- 바우처는 수요자의 선택권과 공급자의 경쟁을 촉진하며 수요자의 소득수준, 나이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정부 혹은 정부와 수요자가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혼합형 재원체계를 갖출 수 있음.
- 에너지 복지와 관련된 다수의 에너지바우처 유사 사업이 존재하나, 향후 통합 또는 개별 운영 예정.
-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신청주의 사업이므로 홍보 및 사각지대 발굴이 매우 중요.
- 바우처의 지급 기준, 대상, 시기 및 방식이 기존 에너지 관련 복지사업과는 차이가 있음.
- 홍보/사각지대 발굴/전달/모니터링 및 보고 등 세부 사항은 지자체에서 담당 또는 지원해야 하는 업무임.
- 에너지바우처 실행에 따른 광역/시도 및 읍면동 단위의 담당 업무 및 지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

#### Note

- 강원도 차원의 이·통·반장,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활용 및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기초 및 읍·면·동까지 홍보 및 지원방안 수립 필요.
- 광역 지자체 차원의 수급권자 실태 조사가 요구되며, 읍·면·동 단위에서의 사각지대 발굴이 필요.
- 읍·면·동 복지사업 담당자 업무 부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인력 배치 및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강원도 산하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과 업무 협약 또는 위탁 및 계약 등의 형태를 통해 지속적인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축적이 가능.



## 1. 에너지 복지의 현황 및 필요성

- 기후변화 취약계층은 민감도나 적응능력의 차이로 같은 지역 내에서도 기후 노출에 더 취약하며, 특히 연령과 성별, 질병 유무, 소득 등 밀집하고 있는 계층의 생물학적, 사회 경제학적 특성에 따라 기후노출에 반응하는 정도의 차이가 발생함 (이진희, 2013).
- 추장민 등 (추장민 외 2인 2010)에 의하면 기후변화가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한 결과, 저소득계층은 기후변화대응 과정에서 에너지 비용의 증가로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소득 역진적인 효과는 악화될 것으로 나타남.
- 소득에서 에너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에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이며, 1분위 가구의 소득대비 연료비는 13.2%인데 반해 10분위 가구는 1.8%에 불과하여 빈곤층의 에너지 비용부담이 고소득층과 비교하여 7배의 차이를 보임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 2011).
- 가계동향 조사 자료에 의하면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의 경우 소비지출에서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내고 있으며, 에너지는 필수재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낮더라도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이는 데는 어려움이 있음.
- 2005년 7월 한전으로부터 단전조치를 받은 가정에서 촛불로 생활하던 여중생의 사망사건, 2012년 11월 조손가정의 '고흥 촛불 화재' 사건 등 전국적으로 '촛불 화재'는 2012년 한해 302건 발생하였으며, 47명의 사상자와 1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함 (연합뉴스, 2013. 12. 24. 일자).
- 중·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한 주택개선 등 근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며, 단기적으로는 저소득층의 기초적 수준의 에너지 사용 지원이 필요하며 최소한의 에너지 이용 보장과 생계관련 안전사고 예방이 절실하게 요구됨. 따라서 현재 실행중인 에너지관련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 모색과 및 에너지빈곤 대상자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필요함.

## 2. 에너지바우처의 개요

### 가. 바우처제도

- '바우처(Voucher)'라는 용어는 1959년 스코틀랜드 정치경제학 저널에 게재된 J. Wiseman의 논문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1962년 Milton Friedman의 「자본주의와 자유」에서 학교이용권 (School Voucher) 프로그램을 제안하면서 발전하여 최근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활용 되고 있음.
- 현재 바우처 형식으로 제공되는 국내 대표적인 공공서비스 중 사회서비스 이용권에 대하여 사회서비스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서비스 이용권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사회서비스이용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상관없이 사회서비스 이용자가 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시하여 일정한 사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 사회서비스의 수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증표를 말한다.

- 사회적 급여형태로서 바우처의 특성은 첫째, 직접적(명시적) 또는 간접적(묵시적) 그리고 혼합적(환급형) 등 다양한 구매력과 지불방식을 제공하고

둘째, 상품과 서비스 범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셋째, 바우처가 일정수준의 통제를 통해 공급과정이나 품질을 규제할 수 있음 (정광호, 2007).

- 공공서비스 전달체계로서 바우처의 특성은 첫째, 수요자의 공공서비스 선택을 증진하고 둘째, 공공서비스 공급기관의 경쟁을 촉진하며 셋째, 수요자의 소득수준, 나이 등 일정 기준에 따라 정부 혹은 정부와 수요자가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혼합형 자원체계를 취한다는 점임 (정광호, 2010).

표. 바우처의 특성과 주요 사례

구분	내용 요약	사례
명시적 바우처 (explicit vouc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쿠폰이나 카드 등의 바우처 형태의 구매권을 수혜자에게 부여하는 방식</li> <li>. 수혜자 신청 → 바우처 발급 → 공급자에게 바우처 전달 → 사업담당부서 공급자에게 지원액 지급하는 형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푸드스탬프(food stamp/ 미국)</li> <li>. 연탄쿠폰</li> <li>. 화물운전자 복지카드</li> <li>. 문화바우처, 여행바우처</li> <li>. 친환경농업 교육바우처</li> <li>.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li> <li>. 불임시술비지원</li> <li>. 근로자능력 개발카드</li> </ul>
묵시적 바우처 (implicit vouc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쿠폰이나 카드 등의 형태의 바우처 지급하지 않음</li> <li>. 바우처 지급기관에서 공급자가 보고하는 수요량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자원제도(medicaid/ 미국)</li> <li>. 주거보조(accommodation supplement/호주)</li> <li>. 만5세 무상교육사업</li> </ul>
환급형 바우처 (reimbursement vouche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비자(수혜자)가 해당 서비스를 직접 지불하여 구입한 후 영수증이나 신고서 등의 제출. 정부가 수혜자에게 지원금 지급 혹은 세액공제 등으로 환급</li> </ul>	

- 공공서비스의 선택권과 경쟁을 통한 생산과 분배의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된 바우처는 현금지원과 동일한 효율성 달성, 공급자간의 경쟁에 의한 서비스 질 향상, 정부와 민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에 의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등의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도 존재함.
- 박광수(2009)는 바우처의 한계를 다음과 같이 주장함. 첫째, 공급자간의 경쟁왜곡으로 인한 마케팅 경쟁초래 둘째, 공급자의 부적절한 선정으로 인한 공급자 보호수단으로 작용 셋째, 공급자 부족으로 인한 추가적인 서비스 수요발생으로 서비스가격 상승 넷째, 수요자와 공급자의 결탁 및 바우처 전매, 낙인효과, 규제를 위한 거래 및 행정비용 상승 등의 문제임.

## 나. 에너지바우처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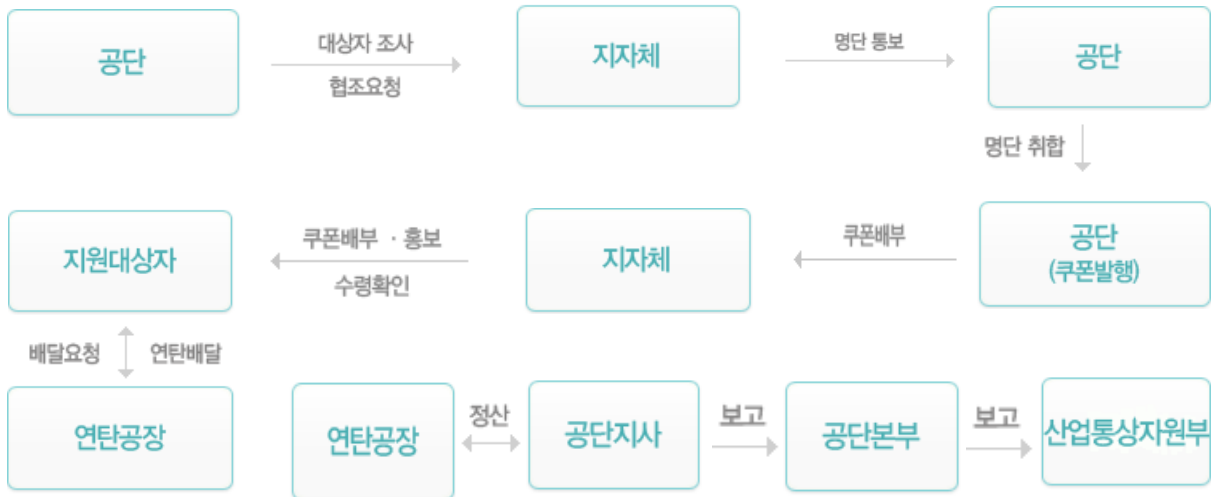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에너지 복지 관련 바우처 사례는 아래와 같음.

### ① 연탄쿠폰제도

- 사업개요 : 연탄을 사용하여 난방하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가구 (소득인정액이 120%이하인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 미포함자와 소득인정액의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한부모 가족), 소외계층 (만65세 이상 독거노인가구 또는 장애인 거주)
- 운영주체 :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해관리공단
- 지원금액 : 1가구 당 169,000원 상당 쿠폰 지원 (평균가격 대비 연탄 약 314장)
- 시행시기 : 2007년 ~ 현재
-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및 한국광해관리공단 문의
- 신청기간 : 당해 5월 1일 ~ 5월 31 (1개월간)



- 쿠폰 발행일 : 10~11월경 (신청일로부터 약 5개월 소요)
- 사용기간 : 수령일로부터 다음해 4월 30일
- 사업추진 체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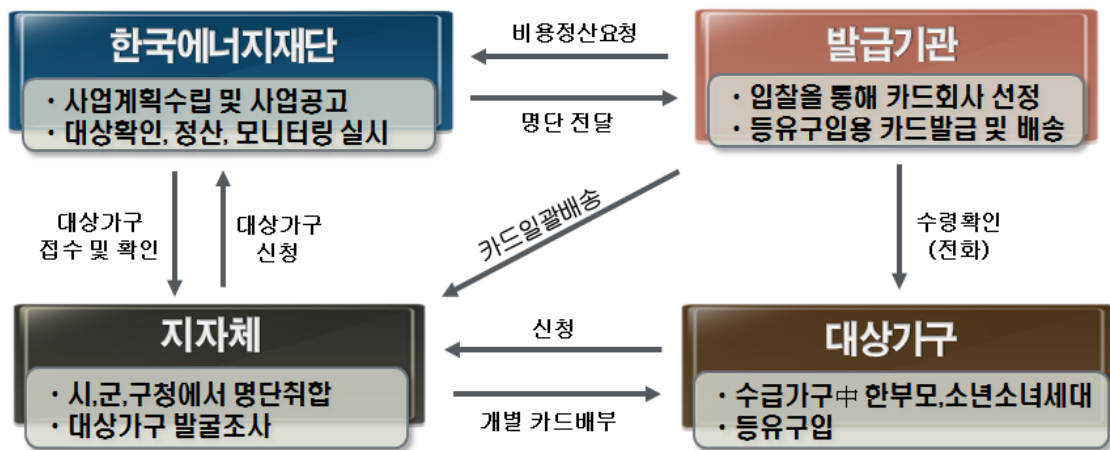


## ② 등유바우처 (등유나눔카드)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소년소녀가장 세대, 한부모 세대 (연탄 쿠폰 지원받는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 : 중복지원 불가)
- 운영주체 : 한국에너지재단, 지자체
- 지원금액 : 1가구당 31만원 상당 난방유 지원 (주유소 평균가격 대비 등유 약 227리터)
- 사업예산 : 복권기금
- 지원일시 : 동절기(2014년도 10~12월)
- 시행시기 : 2007년 ~ 현재
- 카드종류 : 적립된 금액만 사용가능한 정액식 선불카드(충전 불가)
- 발급기관 : 신한카드(입찰을 통해 카드회사 선정 및 운영)
- 이용방법 : 유류판매가 가능한 전국 주유소(12,551개) 및 일반 석유판매소 (2,769개), 기타 업종은 사용불가. 결제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제시,

현금인출 및 개인충전 불가. 당해 8월 8일~30일까지 신청, 9~10월 카드배부, 수령일로부터 연말까지 사용가능

- 추진체계 : 지자체가 신청접수를 하고, 에너지재단은 대상확인 후 카드 회사에 발급정보(명단) 전달
- 사업추진 체계도



### ③ LPG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저소득층에게 난방 및 취사에 사용되는 LPG (프로판 가스)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 사업대상 :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 중 장애인, 노인, 아동이 포함된 저소득 가구
- 운영주체 : 한국에너지재단, 지자체
- 지원금액 : 가구당 90,000원(LPG 40kg 상당 구입금액)
- 사업예산 : 대한 LPG 협회 기금(E1, SK가스)
- 지원일시 : 동절기(10월~2월)
- 시행시기 : 2012년 ~ 현재
- 카드종류 : 적립된 금액만 사용가능한 정액식 선불카드(충전 불가)
- 추진체계 : 지자체가 신청접수를 하고, 에너지재단은 대상자 확인 후

## 카드회사에 발급정보(명단) 전달

### ○ 사업추진 체계도



### ④ 도시가스요금 긴급지원사업

- 사업대상 : 도시가스 중단가구 또는 3개월 이상 도시가스 요금을 미납하여 공급 중단 위기에 처해 있는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단, 순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가스요금 지원 시 향후 2년간 재 지원 불가)
- 지원제외 대상 : 비주거용 도시가스 요금으로서, 가스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 (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가스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가능).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 (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된 도시가스 요금지원
- 운영주체 : 한국에너지재단, 지자체
- 사업예산 : 도시가스회사 후원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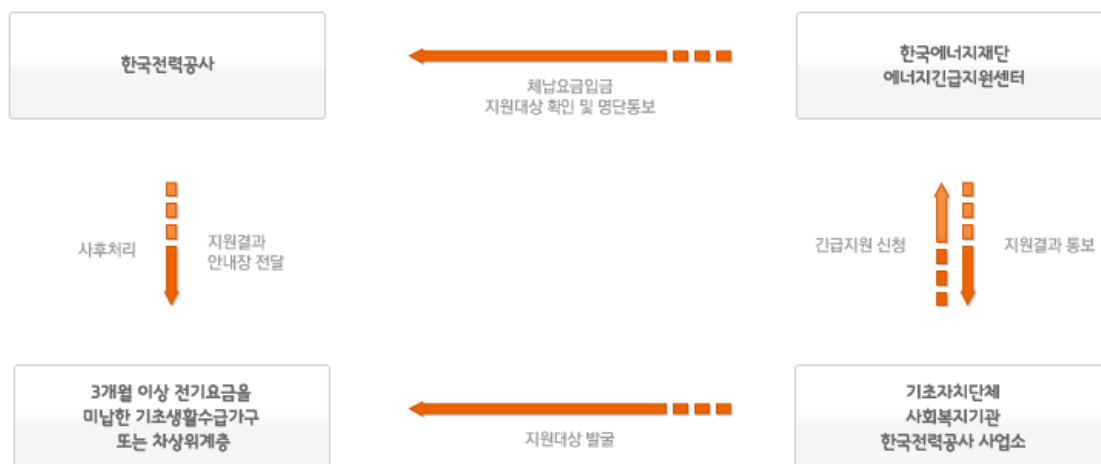
- 지원일시 : 동절기(10월~1월)
- 시행시기 : 2010년 ~ 현재
- 지원방법 : 한국에너지재단이 도시가스에 대상자 지정계좌로 대납
- 전달체계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주민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의 연계를 통해 대상자 발굴 및 긴급지원요청 → 한국에너지재단(긴급지원센터) 긴급지원요청 접수 → 대상가구 확인 → 고객별 입금계좌로 도시가스 회사에 온라인 입금 후 신청기관과 도시가스 회사에 명단 통보
- 사업추진 체계도



### ⑤ 전기요금 긴급지원사업

- 사업내용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공급이 중단될 위기에 처해있는 저소득층에게 전기요금 지원
- 사업대상 :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미납하여 공급 중단 위기에 처해있는 기초수급대상자 및 차상위계층 (단, 순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한하며, 전기요금 지원 시 향후 2년간 재 지원 불가)
- 지원제외 대상 : 미납된 전기요금이 3개월 미만인 가구, 비주거용 전기요금(일반용 저압, 심야전력 등은 제외), 전기요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어 통합으로 청구되는 아파트 거주자(단, 아파트에 거주하더라도 전기요금이 단독으로 고지될 경우에는 신청가능), 여러 가구가 하나의 계량기를 사용

- 하는 경우(단, 세입자 모두 지원대상일 경우 사유서를 첨부하면 지원가능), 2010년도 지원가구 및 2011년도 상반기 지원가구 (2년간 재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가구당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미납된 전기요금 지원(단, 15만 원 이상 요금이 미납된 가구는 별도의 심사를 통해 지원)
  - 운영주체 : 한국에너지재단, 지자체
  - 사업예산 : 한국전력, BC카드, 전기사랑마라톤기부금
  - 지원일시 : 동절기(10월~1월)
  - 시행시기 : 2010년 ~ 현재
  - 지원방법 : 한국에너지재단이 한국전력공사 대상자 지정계좌로 대납
  - 전달체계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주민자치단체(읍.면.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의 연계를 통해 대상자 발굴 및 긴급지원요청 → 한국에너지재단 (긴급지원센터) 긴급지원요청 접수 → 대상가구 확인 → 고객별 입금계좌로 한국전력공사에 온라인 입금 후 신청기관과 한국전력공사에 명단 통보 → 한국전력공사는 사후처리(소전류제한기 해제) 후 지원가구에 안내장 발송하고 소전류제한기 해제, 계량기 재설치 가구 등 특이사항은 한국에너지재단에 통보
  - 사업추진체계도



### 3. 에너지바우처 사업 주요 내용

- 정부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대책으로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2015년 12월부터 시행예정임.
- 본 내용은 국회토론회에서 발표 (국회토론회, 산업통상자원부 주제발표)된 중앙정부의 계획으로서, 향후 실행과정에서 일부 수정될 수 있음.

#### 가. 지급규모

- 총 98만가구의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 가스, 등유 등을 포함한 쿠폰 또는 카드를 지급함. 동절기와 비동절기의 에너지 비용 차액을 지원금으로 산정하였으며, 지급 규모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2월로 동절기 3개월간이며 가구당 지원금액은 최대 16만5000원에서 최저 5만 4000원으로 계획되었음.

#### 나. 지급 대상 및 지급 시기와 방식

- 소득기준, 가구원 특성, 주거형태 등을 기준으로 하며,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40% 수준이며 일정 재산액 이하의 기준을 만족하는 가구로서 변경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중위소득개념을 도입하여 지원기준을 수립함.
- 노인·장애·아동 가구원을 포함한 가구로서 건강유지 등 동절기에 에너지 지원 필요성이 더욱 큰 취약층을 중심으로 지원함.
-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비가 저렴한 만큼 사업시행 초기에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이외의 취약층에게 우선 지원.
- 전기·가스·열·등유·연탄의 5대 에너지를 모두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

(카드)를 지급하며, 3개월 지원금액 전액을 한 번에 바우처로 지원하여, 등유 및 연탄은 처음 구입 시에 동절기 사용분 전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함.

#### 다. 에너지바우처 준비단계 계획 (안)

- 맞춤형 지원을 위해 설계된 지원기준 (가구원수, 사용연료, 주거형태)을 신청 가구 별로 적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기관 (복지부, 지자체, 국세청 등 관계 기관, 에너지 공급업체 등)과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구축
- 지역 복지담당 공무원의 추가적인 업무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접수, 민원처리 등을 최대한 효율화 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신청·접수: 사용자 편의에 초점을 맞추어 관리시스템 설계, 민원처리: 전담기관에서 최대한 민원업무 흡수·대응)
- 지원대상자 발굴을 차년도 본격 실시하며, 이를 위한 지자체, 지역복지단체, 전담기관의 협업체계 가동 필요하며, 충분한 홍보와 인내를 필요로 함.

### 4. 에너지바우처 사업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응 방안 제언

#### □ 지방자치단체의 수급권자 대상 홍보

-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신청'에 의한 지원 사업이므로, 복지 최일선의 읍면동 복지 담당자 및 사회복지관 등을 통한 홍보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함.
- 에너지바우처의 사용이 2015년 12월부터 시작되므로, 9~10월에는 신청을 받아야 하며, 따라서 5~9월 중 홍보가 필요. 특히, 지원대상이 중위소득 40% 이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초수급 대상 보다 확대되어 있으며, 지원 금액이 15등급 (주거형태 및 주에너지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권자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이해가 필요.

-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대상이 노인·아동·장애인이므로, 정보의 접근성이 낮은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홍보 조치가 필요하며, 복지시설의 이용이 높은 계층으로서 사회복지관을 적극 활용.
- 수급권자 및 지원 금액에 대한 정보가 미흡할 경우, 수급권자의 오해로 인한 '신청'건수가 급증하거나 지원 금액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혼란이 야기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수급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 광역 지자체 차원의 이·통·반장,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활용 및 협조 체계 수립을 통해 기초 및 읍·면·동까지 홍보 계획 및 지원방안 수립 필요.

## □ 수급권자 파악 및 사각지대 발굴

- 현재 수급자 98만 가구는 국가 통계를 기반으로 추계된 것으로 읍·면·동 단위의 수급권자를 명확히 파악하여 해당 읍·면·동의 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읍·면·동 단위의 수급권자 실태조사를 통해 중앙정부의 바우처 지원 수준에 대한 요청이 필요. 수급권자의 실태조사 항목은 소득 및 재산 수준 이외, 주요에너지 원, 에너지 사용량, 계량기 확보의 여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음.
- '신청'주의 바우처 사업이므로, 수급권자이지만 낙인감으로 인해 신청을 하지 않거나 홍보 및 신청 당시와 발급시기의 시차로 인한 수급권 발생 (가구의 경제적 상황 악화, 이사 등) 등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사각 지대 발굴은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 봉사 단체 등 민간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각지대 최소화 노력이 필요.
  - ▶ 광역 지자체 차원의 수급권자 실태 조사가 요구되며, 읍면동단위에서의 사각지대 발굴이 필요.



## □ 복지 전담 공무원의 업무 경감을 위한 업무 분담 및 인원확충 고려

- 읍·면·동 단위 복지담당자의 복지 지원 사업 관련 업무가 300여건 수준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자체 사업을 포함하게 되면 300건을 상회하는 경우도 있음)으로 에너지바우처 관련 신규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현황 업무 파악이 선행되어야 함. 특히, 읍·면·동 단위에서는 산업 및 주거 담당자 업무로 하달되더라도 업무의 특성이 '복지'와 관련된 사업일 경우, 복지담당자가 수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의 과부하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분산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함.
- 단, 수급권자의 수급 여부 확인은 복지관련 전산시스템(행복e음)의 접근 권한과 관련이 있으므로 에너지바우처 사업 관련 복지 담당자의 필수업무와 부가 업무를 구분하여 업무 부하를 고려.
  - ▶ 읍·면·동 복지사업 담당자 업무 부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인력 배치 및 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정부에 요청할 수 있도록 검토 필요.

## □ 유관 기관과 공조 및 연계 방안 수립

-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홍보 및 사각지대 발굴 등과 관련하여 강원도 산하 기관 관내 민간 복지 단체 및 정부 산하 기관을 활용함으로써, 에너지 바우처 사업의 원활한 운영 및 복지담당공무원의 업무 경감을 도모할 수 있음. 또한, 중장기적인 주거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계획·수행함으로써 정부의 에너지 복지 정책에 기여할 수 있음.
- 강원도 산하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을 활용한 공조 방안으로서 업무 협약 또는 위탁·계약 등의 형태를 통해 지속적인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과 데이터 축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5. 참고문헌

- 이진희, 왕광익, 취약계층을 배려한 녹색도시 정책 방향,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Brief, 2013.
- 추장민, 공성용, 백승아, 저소득계층의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연구 I,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0
- 정광호, 바우처 : 공공서비스 선택권과 경쟁, 한국거버넌스학회2006년 하계 공동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06.
- 에너지경제연구원, 2011년도 에너지총조사보고서, 2011
- 연합뉴스, 겨울철 촛불화재' 빈발 서울서 5년간 328건, <http://www.yonhapnews.co.kr/society/2013/12/23/0705000000AKR20131223185000004.HTML>, 2014. 12월 확인
- 정광호, 바우처 분석: 한국과미국을 중심으로, 행정총론, 2007
- 정광호, 바우처분석, 법문사, 2010
- 박광수.「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제도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10
- 에너지시민연대 국회토론회, '에너지바우처사업', 에너지 복지시스템 구축 가능한가?, 에너지시민연대, 이원욱 국회의원, 2014

- 발 행 인 : 홍 성 태
- 발 행 처 :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 발행번호 : 2014-21호
- 발 행 일 : 2014년 12월 26일

---

[www.crik.re.kr](http://www.crik.re.kr)